

긴급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 공고문

질병, 사고,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하기 위해 「2026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12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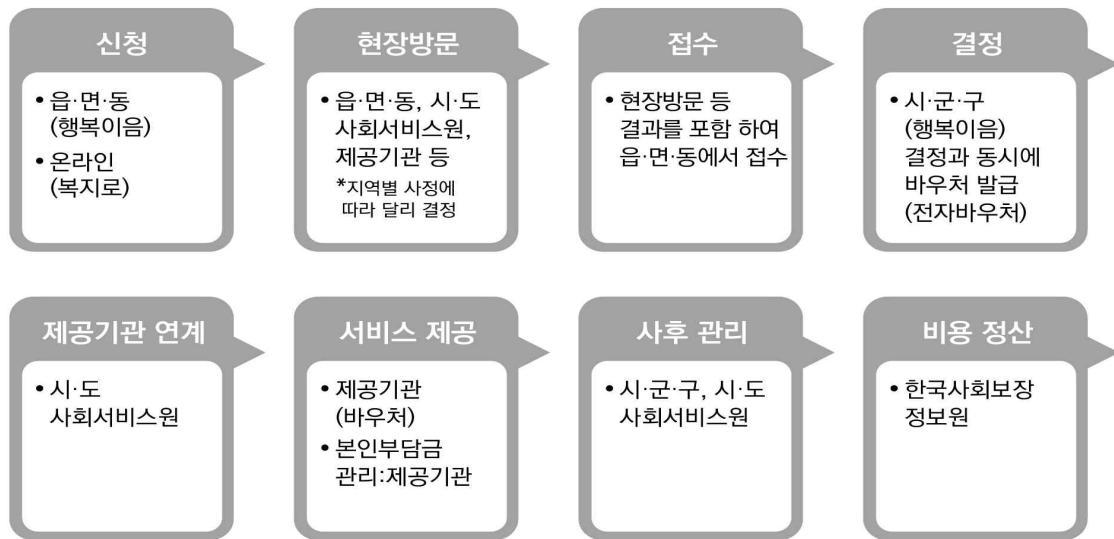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I

사업 개요

- **사업명:** 긴급돌봄 지원사업
- **사업목적:** 질병, 사고,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등에 대응해 신속하게 돌봄 공백을 보완하여 도민의 돌봄 불안을 해소함
- **사업대상:** 주돌봄자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자
- **사업기간:** '26. 1. ~ '27. 12.(2년)
- **선정규모:**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8개소
※ 시·군 인구 분포 및 2026년 목표 이용자 수 등에 따라 시·군별 1~6개 제공기관 선정
- **사업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기관의 제공인력(돌봄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 가사 ·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
 - 긴급돌봄 시간당 단가는 장기요양보험 수가(방문요양, 방문목욕)준용
※ 지침 개정 시 이용시간 및 단가 변동 가능
- **제공방식:** 읍·면·동에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현장방문을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
- **지정주체:** 전북특별자치도
- **지정주관:**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 긴급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절차 >



<출처:2025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

II

공모 신청 자격 및 심사기준

□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를 두고 있으며,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 운영, 인력기준을 갖추고 돌봄서비스 제공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 선정심사

- (심사기준) 운영계획서 등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 평가표에 따라 심사

< 심사 평가표(안) >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실적	15점	· 유사 서비스 제공 실적 및 평가
	제공기관 역량	10점	· 제공기관의 평가 등 및 역량 사항
서비스 제공인력	서비스 제공인력 전문성	10점	· 제공인력 자격, 경력, 교육 여부 등
	서비스 제공인력 유지	15점	· 제공인력 지속성, 근로조건(임금수준, 4대보험 가입, 퇴직금 등) · 제공인력 활용 등(서비스 가능 인력)
서비스 질 관리	서비스 관리의 적정성	10점	· 사업지침 이행
	서비스 질 관리	10점	· 서비스 과정 기록 및 평가, 모니터링 · 제공인력 정보제공
자체 기준	자체 평가기준	30점	· 사업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충실성 · 기관 운영의 안정성 · 기타 현지확인 결과 등

- (심사절차) 공무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한 서면심사
-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기관 선정

□ 공모일정

구분	일정	내용
모집공고	'25. 12. 15.(월) ~ 12. 26.(금)	·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서류접수	'25. 12. 18.(목) ~ 12. 26.(금)	·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돌봄센터 - <u>방문접수 및 이메일 접수</u> ※구비서류: 공고문 참조
서류검토	'25. 12. 29.(월) ~ 12. 31.(수)	· 서류 적격 여부 검토
서류심의	'26. 1. 6.(화) ~ 1. 7.(수)	· 서류심사(심사위원회)
선정결과 통지	'26. 1. 9.(금)	·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제공기관 지정	'26. 1. 12.(월)~1. 13.(화)	· 전북특별자치도

※ 상황 변화 등에 일정 조정 가능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2025. 12. 18.(목) ~ 2025. 12. 26.(금) 18:00 까지

○ (제출서류)

- ① 신청 공문 1부
- ② (서식1)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자 등록신청서 1부
- ③ (서식2) 사업운영 계획서 1부
- ④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중 사본 1부
- ⑤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 ⑥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⑦ <기타>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서식은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해당공고」에서 다운받아 작성

○ (제출방법)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접수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20, 2층(전북인돌봄센터)
- 이메일: **jjyj@jeonbuk.pass.or.kr**

▶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변환, 서류별 번호를 매긴 후 1개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예 : 2026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기관 공모 신청_OO재가센터

▶ 제출서류는 기관별 최초 발송 메일 기준 심사 (자료제출 시 최종 확인 후 발송 필요)

- ▶ 자료 보완, 누락, 오발송 등 재발송 필요할 경우 전북인돌봄센터 유선 확인 후 기존 메일 제목에 (수정) 추가하여 재발송(1회에 한함)
 - ☞ 예 : 2026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기관 공모 신청_OO재가센터(수정)
 - ※ 제출서류는 검토 후 필요시 보완 요청할 수 있음
 - ※ 전자우편(e-mail) 발송 후 확인 전화 필요

□ 기타사항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이 허위이거나, 기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사업 선정 취소, 사업 중단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관에 책임이 있음
- 제공기관 선정 후 사업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2026년 긴급돌봄지원 사업 안내)에 따르며 기타 세부 내용은 협의하여 진행
- 이 계획에 의하여 지원받은 제공기관은 사업의 수행 과정 중이나 수행 완료 후 평가기관에서 사업 평가를 위해 자료 요구나 현장 확인 요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따름

※ 문의: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돌봄센터(☎ 063-902-0040, 0088)

<참고: 제공기관 등록 요건>

■ 재가방문서비스 기관등록 요건

1) 시설 기준

- (시설 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공간을 갖춘 시설
- (장비 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갖춘 시설
 - * 이동지원을 위한 제공기관 자체 차량 보유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안전 등 사유로 제공인력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은 금지하도록 함

2) 인력 배치 및 자격 기준

- (제공기관의 장) 1명
 - * 시·도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의 경우 제공기관장 배치 제외
- (관리책임자) 1명
- (제공인력) 10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3명 이상)
 - * 다만, 제공인력의 기준과 관련해 시·군·구 지역 등 제공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한해 제공인력 기준 완화 적용 가능(농어촌지역의 경우 제공인력 3명 이상 배치로 완화 가능하나, 추가적 기준 완화가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통한 복지부와 협의 필요)
 - * 농어촌지역: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 지역 중 읍·면은 전 지역, 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제공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제공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예시 제공기관 등록 시 제공기관의 장 1명, 서비스별 제공인력 10명 이상 배치

3)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 기준

-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②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 ③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공인력 자격 기준

- ①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 ②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지 1년 이상인 자

5) 제공자 결격사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의 경우로서 임원 중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자로 등록 불가
 -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⑥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⑦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유사 서비스 제공실적이 있고 성과가 우수한 기관

- 장기요양 통합재가센터, 지자체 및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기관 등
예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방문요양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관련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은 기관인 경우 우선 지정
예시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B등급('우수')이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 결과 '우수' 이상을 받은 기관은 우선 지정 가능

※ (예외) 방문요양시설 시설장의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장 겸임 규정

- 방문요양시설 시설장은 방문요양 업무를 위해 상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긴급돌봄 서비스의 시범사업적 성격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겸임을 허용 다만, 기존에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장을 겸임 중인 방문요양시설 시설장은 긴급돌봄 서비스의 제공기관장 겸임이 불가능함

구분	방문요양시설 시설장	일상돌봄 제공기관장	긴급돌봄 제공기관장
긴급돌봄 제공기관장 겸임 가능 여부	○	×	가능
	×	○	가능
	○	○	불가능

■ 방문목욕서비스 기관등록 요건

-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지역에서는 기준에 지정된 제공기관 중 아래 조건을 갖춘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신규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 중 '방문목욕' 제공기준*을 갖춘 기관으로 이동목욕 차량을 보유한 시설에 한하여 지정 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1) 시설의 규모

-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시설: 시설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연면적 기준)

2) 시설 및 설비 기준

-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시설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구분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이동목욕차량	헬스케어, 온도계 등 방문 간호에 필요한 비품
방문목욕	○	○	○	-

* "이동목욕차량"이란 육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 상 차량용도 (차명)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이거나 자가용 또는 사업용으로 등록된 일반 차량을 이동목욕용으로 구조변경하여 자동차등록증의 구조·변경사항에 해당 내용이 표기된 차량을 의미함

3) 직원의 자격기준 및 인력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 준용

4) 제공인력 자격 기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출처:2025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